

**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**(제15조의2제1항 관련)

1. 장비

가. 공공하수도(하수관로는 제외한다) 관리대행

- 1) 수온, 수소이온농도(pH), 용존산소(DO) 및 산화환원전위(ORP) 측정기
- 2) MLSS(Mixed Liquor Suspended Solid) 측정기
- 3) 실험분석장비(방류수수질기준 항목)
- 4) 이동식 유량계(1대 이상)

나. 하수관로 관리대행

- 1) 준설차량
- 2)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설비
- 3) 연막시험용 배풍기
- 4) 공기압 시험기

비고

- 1.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2.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설비,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,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- 3.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2. 기술인력

구분		기술인력
가. 공공 하수도(하수관로는 제외한다) 관리대행	시설용량	
	1) 500m <sup>3</sup> /일 미만	가) 다음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(1)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(2) 수질관리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 나) 수질환경기사 1명 다) 다음의 (1)부터 (4)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(1)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 (2) 화공기사 (3) 토목기사 (4)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 라) 환경측정분석사 1명
	2) 10,000m <sup>3</sup> /일 미만	가) 다음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(1)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(2) 수질관리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 나)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(각각 다른 항목에 해

		<p>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)</p> <p>(1) 토목기사, 수질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대기환경기사, 화공기사</p> <p>(2)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</p> <p>(3)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</p> <p>다)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(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)</p> <p>(1) 토목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</p> <p>(2)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</p> <p>(3) 기계정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</p> <p>라) 환경측정분석사 1명</p>
	<p>3) 10,000m<sup>3</sup>/일 이상</p>	<p>가) 다음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</p> <p>(1)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</p> <p>(2) 수질관리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</p> <p>나)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</p> <p>(1) 토목기사, 수질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대기환경기사, 화공기사</p> <p>(2)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</p> <p>(3)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</p> <p>다)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</p> <p>(1) 토목기사, 수질환경기사, 폐기물처리기사, 대기환경기사, 화공기사</p> <p>(2)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</p> <p>(3)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</p> <p>라) 다음 (1)부터 (3)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</p> <p>(1) 토목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</p> <p>(2)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</p> <p>(3) 기계정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</p> <p>마) 환경측정분석사 1명</p>
<p>나. 하수관로 관리대행</p>		<p>가) 다음의 (1)부터 (4)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</p> <p>(1) 수질환경기사</p> <p>(2) 토목기사</p> <p>(3) 전기기사, 전기공사기사</p> <p>(4)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</p> <p>나) 다음의 (1)부터 (4)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(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)</p> <p>(1) 수질환경산업기사</p> <p>(2) 토목산업기사</p> <p>(3)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</p> <p>(4) 기계정비산업기사,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</p>

비고

1. 기술인력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2.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

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,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3.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4.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5.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·폐기물처리·화공·화학분석·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